2007. 9. .

- 제118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 시정질문 -

답 변 요 지 서

주 민 생 활 지 원 국 장

질문 요지서 목록

▶ 주민생활지원국장 - 11(답변 8, 서면 3)

연번	의원명	질 문 요 약	소관부서	비고
1	김헌식	1. 장애인 복지 시책 관련 ·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현황 및 설치율 ? . 의무설치 대상 시설 지도, 점검, 보완 시행방법 ?	(서면) 사회복지	P5
2	곽호종	1. 기초생활수급권권자 책정 간소화 방안 ?	주민생활	P7
		2. 우륵문화제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개칭할 용의 ?	(서면) 문화체육	P9
3	정상교	1. 제114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추진사항 ? ·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추진 건 · 탄금호 연꽃단지 조성 건 · 남산 산성 망루 설치 건 · 반기문 거리 지정 · 관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건	사회복지 환경 문화체육 관광 사회복지	P10 P11 P11 P12 P13
		2. 호암지 청소년수련원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 . 외부 리모델링할 예산은 ?	(서면) 사회복지	P14
4	류호담	1.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채용 용의?	문화체육	P15
5	이종갑	1.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지원활동과 문화의 거리 추진, 시립우륵국악단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문화의 상설 소프트 프로그램으로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다고 봄 . 우륵국악단의 상설공연 활성화 용의 ?	문화체육	P16

연번	의원명	질 문 요 약	소관부서	비고
6	최병오	1.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· 충주시의회는 2006.2.24일 제104회 충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. . 지난 해 충주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는 충주시도 합의한 내용이 아니었나? · 시행도 하지 않고 충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좋은가? · 예산 집행도 하지 않고 학교급식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공지했는데 그 이유는 ? · 이미 지난 해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3자가 합의하지 않았는가? · 기존 조례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이 아니었나? ·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이 아니었는데 충주시는 왜 합의했는가? .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상위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도출했는데, 그렇다면 그 당시는 현재 근거를 대는 상위법이 없었는가? · 그렇다면 그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2007년도 책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가? · 학교급식관련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도 상위법 때문에 2007년도 급식지원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가? ·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타 지자체는 몇 개나 되며 집행한 타 지자체는 몇 개나 되나?	사회복지	P17

연번	의원명	질 문 요 약	소관부서	비고
		· 타 지자체 중 예산을 집행한 근거는 무엇이며 충주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? ·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이미 시민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면서까지 전면 개정을 추진 강행할 것인가? · 충주시가 개정한 조례를 본 의회가 통과시킬 경우, 본 의회도 합의안을 번복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데 본 의회가 개정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?		

답 변 요 지 서 (서면)

질문의원	김헌식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질문내용

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하여

○ 충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, 현재 시설수
- 현황과 설치율은 몇%인가?

○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, 점검, 보완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 하는가?

□ 답변내용

○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현재 시설현황

구 분	의무설치대상	설치시설	설치율
2003년(전수조사)	2,114 건	1,806 건	85%
2006년(표본조사)	2,156 건	2,038 건	94%

※ 편의시설 설치 시설 수는 건물의 매개시설, 내부시설, 위생시설, 안내시설, 기타시설 중 의무적 설치시설에 대한 건수임.

〈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근거〉

-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며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시행.

질문의원	김헌식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〈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〉

- 매개시설 : 주출입구접근로,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
- 내부시설 : 출입구(문), 복도, 계단 또는 승강기
- 위생시설 : 대변기, 소변기, 세면대, 욕실, 사워실 · 탈의실
- 안내시설 : 점자블럭, 유도및안내설비, 경보및피난설비
- 기타시설 : 객실 · 침실, 관람석 · 열람석, 접수대 · 작업대 매표소 · 판매기 · 음료대

- 대상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따라 의무와 권장 설치사항으로 구분되며 신축이나 증축건물은 건축 협의를 통하여 편의시설 의무 설치사항을 검토를 받아야 건축허가 가능.

※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적용됨으로 이법 시행이전 건축물은 미적용.

○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· 점검 및 보완방법

- 2007. 4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위반사항 단속계획에 의거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항 계도(16명)
- 충청북도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북지원센타와 합동으로 공공시설 28개소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미비사항 보완 조치 완료
  (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, 장애인 주차구역 안전통로 확보)

답변 요지서

질문의원	곽호종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질문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 간소화 방안은 ?

□ 답변내용

【기본현황】

(2007. 8월말 현재)

계		기초생활보장		모(부)자 가정		경로연금		차상위 계층	
가구	가구원수	가구	가구원수	가구	가구원수	가구	가구원수	가구	가구원수
8,723	13,615	4,138	7,186	596	1,606	2,975	3,353	1,014	1,470

【'07 책정현황】

○ 결정건수 : 660건 (적합 589건, 부적합 71건)

○ 보장내역 : 589건 (기초 398건, 모·부자 70건, 차상위계층 117건 노인 4건)

〈선정기준〉

○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기준

-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비(4인/1,295천원)기준이하
-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(재산 : 3,100만원이하)

〈 처리절차 및 조사서류〉

○ 시 접수→재산소득조회→부양의무자 조사→방문조사 →개별통보

○ 신청서, 호·재적등본, 소득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등

〈 '07 책정기준 완화내용〉

○ 수급자 책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지원대상자 확대

- 2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⇒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
질문의원	곽호종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○ 차상위 장애수당 신설('07.1.1), 차상위 장애수당 부양의무자 기준폐지('07.8.1)

【 책정 간소화 방안 】

○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읍면동에서 복지대상자 보장/급여 신청시 조사서류를 받아 시에 제출, 복지대상자 현지 조사 결정함으로서,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5.8일 단축되었고

○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균 3%정도 인상하고, 보장기준 완화, 충주시의 경우 매년 수급자수가 15% 증가추세에 있으며
※ '08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/1,266천원 - 평균 6%인상 예상

○ 수급자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가사업이며 시비예산이 수반됨으로 지방재정상 조례제정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, 지원확대를 위해 지침 완화 등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으며,

○ 법령과 지침의 한도 내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
답 변 요 지 서(서면)

질문의원	곽호종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☐ **질문내용**

○ 우륵문화제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개칭할 용의는?

☐ **답변내용**

○ 중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

○ 시의회에서 논의하여 우륵문화제 명칭변경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의견을 내주시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 변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.

답 변 요 지 서

질문의원	정 상 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질문내용

○ 제114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?

·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건
· 탄금호 연꽃단지 조성 건
· 남산 산성 망루 설치 건
· 반기문 거리 조성 건
· 관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건

□ 답변내용

1.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건

○ 노인복지관 현황

· 위 치 : 충주시 교현동 714번지
· 규 모 (2003년 6월 준공)
- 부 지 면 적 : 1,626㎡
- 건축연면적 : 1,840.8㎡ (지하1층, 지상 2층)
- 건 축 비 : 1,915백만원(국비 247, 교부세 300, 시비 1,368)
- 복지관운영 : 종사자 ⇒ 11명(대표 이선복)
운영비 ⇒ 289백만원(시비)⇒ 인건비 · 운영비

※ 현 노인복지관 3층 증축 추진중
- 설계완료 : 2007. 6. 18
- 건 축 비 : 9억원(도비 3억원 확보, 시비 6억원 2회추경 반영)

○ 현 노인복지관이 증축중에 있어 권역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안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겠음.

질문의원	정 상 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2. 탄금호 연꽃단지 조성건

○ 추진사항

· 타당성조사용역비 확보(1회추경) : 30,000천원

· 타지자체 견학 : 시흥시 연꽃단지(논), 전주시 덕진공원(저수지)

⇒ 시흥시 연꽃단지 운영전문가 오국진 탄금호 현지답사(2007.8.)

○ 문제점

· 탄금호 낚시터주변은 수심이 깊고 수위조절이 어려우며 바닥은 자갈이 많은 토질로 식물생식이 좋지 않아 연생육 곤란

· 2001년도에 탄금호 유입부분(하구암천)에 노랑어리연을 식재한 결과 현재 수심이 4~50cm이하인 일부지역만 생육하고 있는 상태임

○ 향후계획

· 연 생육이 가능한 일부지역에 시범식재하면서 확대 검토

3. 남산산성 망루 설치에 관한 건

○ 문화재 현황

· 문화재명칭 : 충주산성 / 지정 내용 : 도지정 기념물 제31호

○ 발굴조사 결과

· 발굴조사결과 성벽, 문지, 우물터 및 산 정상부에 건물지 등이 확인됨

○ 복원 추진상황

·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성벽, 문지, 우물터 등을 년차적으로 복원해 나가고 있음

· 산 정상부의 건물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발굴조사 후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복원할 계획임

질문의원	정상교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4.· 반기문 거리 조성 건

○ 반기문 거리 조성
- 새주소 사업과 연계한 도로명 부여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, 지난 5월 시장님께서 UN 방문 반기문 총장님 면담시 현직 등을 이유로 본인 이름 사용을 고사
- 현재 추진이 중단 상태임

○ 반기문 총장 자료 확보
- 홍익대학교 한도룡 교수와 수집범위, 절차, 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음

○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
- 시장님 답변 참고

질문의원	정상교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5. 관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건

○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현황
- 관내등록경로당 수 : 480개소(2007. 8월현재)
- 경로당운영보조금 지급액 : 1,220천원/개소/년
  - 운영비 : 720천원/개소/년 (분기별지급)
  - 난방비 : 500천원/개소/년 (상반기 300, 하반기 200)

○ 난방비의 현실화를 위한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설치 지원
- 5개년계획(2007년 ~ 2011년까지)에 의거 설치완료 예정
  - 기 설치경로당 수 : 83개소
  - 2007년도 설치 : 79개소 / 553,000천원

○ 경로당 운영보조금 실태조사
- 조사대상 : 관내 등록경로당
- 조사내용 : 경로당별 운영비 사용실태 및 난방비 소요액
- 조사결과
  → 운영비 : 검토결과 운영비는 지원액으로 경로당 운영 가능
  → 난방비 : 면적별, 난방형태별 난방비가 지원기준액보다 초과소요

○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경로당별 면적과 난방형태 등을 고려 지원기준 등을 검토중에 있음
- 100㎡이하 : 500천원/년 → 650천원/년
- 100㎡초과 : 500천원/년 → 800천원/년

답 변 요 지 서 (서면)

질문의원	정상교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질문내용

○ 호암지 청소년수련원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하여
현재 수련원을 외부만 리모델링할 경우의 예산은?

□ 답변내용

○ 청소년수련원 현황

- 위　　치 :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
- 부　　지 : 41,460㎡
- 연 건 평 : 5,689㎡ (수련원 4,608㎡, 체육관 1,081㎡)
- 등록일자 : 1998. 12. 16.
- 현 청소년수련원의 건물도색예산을 2007년 1회 추경에 25,000천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.

○ 청소년수련원건물 리모델링은 계획한바 없으며,
향후 필요시 건물 리모델링 등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○ 현대식 건물인 수련원을 기와 등의 지붕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외관상 문제점이 있으며,
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(기와지붕)은 향후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예산 투자 여부를 검토하겠음.

답 변 요 지 서

질문의원	류 호 담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질문내용

체육진흥을 위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로 도시이미지 마케팅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, 우리시에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는 ?

□ 답변내용

○ 스포츠 마케팅 기본전략

- 스포츠 산업을 레저·관광자원과 연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유치 강화를 위하여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채용을 적극 검토

스포츠산업

-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
- 국내시장규모 : 2005년 기준 19조원 (GDP의 2.5%)
  - 2010년 32조원 전망 (문광부 "스포츠산업 비전 2010")
  - 미국의 스포츠 산업 : 자동차산업의 2배, 영상산업의 7배
- 주 5일제 정착 및 여가활동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대
  - 스포츠 가계지출 : 99년 238천원 ⇒ 02년 325천원(36%↑)
-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
  - 충주이미지 제고 + 지역경제활성화 기여

답 변 요 지 서

질문의원	이종갑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질문내용

○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지원활동과 문화의 거리 추진, 시립우륵국악단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문화의 상설 소프트프로그램으로서는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는 데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상설공연을 활성화 할 용의가 있는지?

□ 답변내용

○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음

○ 성내동 관아공원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갤러리, 간이무대설치 등 문화기반시설을 연차적 정비, 문화예술단체의 공연, 전시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2007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운영 현황

- 정기·기획 수시공연 및 초청공연 13회
- 찾아가는 국악공연 (기관, 단체, 불우시설 등) 6회
-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 (가야금외 12개강좌/230명) 3월~8월

○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상설 공연 활성화 추진의견

- 충주시립우륵국악단원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상설공연 추진 검토

답 변 요 지 서

질문의원	최 병 오 의원	답변공무원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질문내용

○ **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**

- 충주시의회는 2006. 2. 24일 제1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.
  지난해 충주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는 충주시도 합의한 내용이 아니었나 ?
- 의회, 시민단체, 충주시 3자가 합의한 조례내용을 시행도 하지 않고 충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좋은가 ?
- 현 조례에 의거한 2007년도 예산을 책정했다. 그러나 예산 집행도 하지 않고 학교급식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공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? 등

□ 답변내용

○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2월 의회와 시민단체 충주시가 협의하여 2006. 3. 20 제정 공포되었음.

○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2007. 1. 20 전부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음.

○ 시에서는 기존조례에 의하여 지난 8. 24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쌀 및 우수일반미로 품목을 지정하여 교육청에 3억원 예산지원을 하도록 결정되어 예산집행 추진중에 있음

○ 현재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한 후 개정 여부 검토